



# KV MATERIALS

케이브이머티리얼즈  
기술그룹 채용

2022.08.16 ~ 2022.08.31

## HOW TO APPLY

# 채용 절차 및 지원 방법



서류전형



면접



건강검진



최종 합격

## **공통 자격**

- 학력 : 대졸(4년제) 이상
- 전공 : 재료공학, 기계공학
- 나이/성별 : 무관
- 경력 : 신입 및 경력(2년 이상)
- 어학 : OPIc IL 또는 Toeic Speaking IM 이상(신입 지원자)
- 우대사항 : CAD 활용 능력, 금형설계/사출 경험자, 영어/중국어 가능자

## **담당 업무**

- 세라믹 분말 제조 공정/품질 관리, 공정 산포개선 및 안정화, 프로세스 개선

## **근무 조건**

- 근무형태 : 계약직(1년 후 정규직 전환 검토)
- 근무일시 : 주 40시간 (월 ~ 금 오전 08:00 ~ 17:00)
- 근무지역 :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242 (케이브이머티리얼즈)
- 급여수준 : 신입 - 회사 내규에 따름  
경력 - 연봉 4,500만원 ~ 6,300만원 (성과급 별도, 경력에 따라 상이)

## **복리 후생**

- 복지포인트, 개인연금, 단체보험 지원
- 기숙사 지원 및 사내식당 운영 (아침, 점심, 저녁 제공 및 Takeout 메뉴 운영)
- 의료비 지원, 종합건강검진(배우자 종합건강검진 포함), 건강관리실 운영
-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, 수평적 조직문화
- 경조사 지원

# 접수 절차

- 접수기간 : 2022년 08월 16일(화) ~ 2022년 08월 31일(수) 24시
  - 접수방법 : 사람인 입사지원
  - 이력서양식 :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서 (미작성 시 서류전형 상 불이익 발생)
  - 제출서류 :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(첨부파일 제출)
    -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(첨부파일 제출)
    - 경력증명서 (첨부파일 제출)
    - 자격증 사본 (보유시)
    - 국가보훈대상 증빙서류 (소지자 한함)

유의 사항

- 제출서류 및 관련 사항에 있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필수 제출서류 미 구비 시 채용 절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-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작성할 주십시오.  
(신체적조건, 출신지역, 혼인여부, 본인 및 가족의 학력 등)
  - 국가등록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
  - 위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.

## ※ 채용서류 반환 관련 안내

-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받은 서류는 채용절차 후 30일 이내 삭제처리하고 있습니다.  
(개별 삭제요청 시 즉시 삭제처리)
  -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합격 통보  
14일 이후 ~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 
모두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  
(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될 경우 제외)
  - 위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안내됩니다.

## 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 
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 
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